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0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업 및 대상 확대 ..	16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5.

(3) 회 부 일 : 2025.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¹⁾를 감면하는 것임.

1992년 신설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감면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율]

구 분		지 역 및 업 종	감면율(%)
기업규모	소기업	도매업등(의료업 포함) 업종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2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 업종	5
		수도권 안의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1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15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1)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

야 함.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하며²⁾,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조 3,636억 원이며, 소득세 감면규모는 1조 3,130억 원이고, 법인세 감면규모는 1조 506억 원이었으며, 2025년과 2026년 조세지출 규모는 2조 3,379억 원과 2조 4,127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 소기업의 매출액 산정 규모는 세부업종에 따라 15억 원~140억 원으로 상이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4,924	6,029	10,953
2012	6,506	6,323	12,829
2013	6,384	6,256	12,640
2014	6,845	6,967	13,812
2015	9,011	7,079	16,090
2016	9,973	8,670	18,643
2017	10,492	10,111	20,603
2018	11,409	10,805	22,214
2019	10,885	9,535	20,420
2020	10,680	9,879	20,559
2021	9,995	9,534	19,528
2022	12,632	10,858	23,489
2023	13,738	11,598	25,336
2024	13,130	10,506	23,636
2025(전망)	12,975	10,404	23,379
2026(전망)	13,496	10,631	24,127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혜현황을 보면, 활용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본 제도 활용기업 수는 법인과 개인 각각 15만개 및 76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각각 23만개와 116만명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기업당 수혜규모는 법인 500만원 내외, 개인은 100만원 초반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수혜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신고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수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2,191	209,112	218,488	210,282	226,671	231,807
감면액	696,669	759,247	867,029	1,011,138	1,080,514	953,514	987,883	953,354	1,085,758	1,159,784
법인당 수혜규모	4.62	4.75	5.02	5.34	5.34	4.56	4.52	4.53	4.79	5.00
개인 사업자수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55,667	978,291	949,301	1,054,908	1,087,528	1,096,239
감면액	901,040	997,228	1,049,203	1,140,906	1,088,412	1,067,950	999,473	1,263,184	1,373,832	1,313,035
개인당 수혜규모	1.18	1.21	1.21	1.23	1.14	1.09	1.05	1.20	1.26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p. 44

나.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대상: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 ○ 유형별 공제율: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유형별 공제율: (현행과 같음)	
본점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20	10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20	-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30	15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30	15	
○ 감면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1인당 5백만원 감소 ○ 적용기한: 2025. 12. 31.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정일영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문금주의원안) 2030. 12. 31.(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문금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년 1월 1일(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박용갑의원안)	

* 문금주의원안 2024. 12. 24. 발의(의안번호 6885), 정일영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25), 이만희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81),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박용갑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4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 박용갑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말까지 3년, 문금주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4년, 이만희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업체 수는 829만 8,915개로서,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 명으로서 전체 종사자 수 중 80.4%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구 분	2022년 (비중)	2023년 (비중)	증가(증감률)
기업체 수	8,042,726개 (99.9%)	8,298,915개 (99.9%)	256,189개(3.2%)
종사자 수	18,956,294명 (81.0%)	19,117,649명(80.4%)	161,355명(0.9%)
매출액	33,090,291억원 (44.2%)	33,012,545억원 (44.9%)	-77,746억원 (-0.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5. 8.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산업생태계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폐업자수는 2023년 91.1만명으로 2021년 81.9만명 대비 9.2만명 증가하였고,³⁾ 법인 파산 신청건수는 2024

3)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년 1,940개사로 2021년 955개사 대비 약 1,000개사가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가 법인사업자의 재무성과, 투자, 노동생산성 및 고용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음.⁴⁾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동 제도 수혜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급여액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⁵⁾

둘째, 본 제도로 인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수평적 형평성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 적용 후 수혜기

4)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5)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9%p 인하되었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는 2.1%p까지 확대되었음.

또한,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는 수혜 대상 업종을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사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여부가 상이하여 수평적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⁶⁾.

셋째, 본 제도는 1992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운영 중인 조세감면 제도로서 기업이 이를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조세특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본 제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 결과 일몰 연장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적용 종료 시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

6)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제한 폐지(이인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감면대상 업종: <u>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장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u> ○ 내용: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5~30% 세액감면		□ 대상 업종 제한 폐지 ○ <u>업종제한 폐지</u> ○ (현행과 같음)	
본점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20	10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20	-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30	15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30	15
○ 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감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이인선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09)

□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⁷⁾ 외에 어떠한 업종이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 일부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행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이 납부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할 세액의 5~30%⁹⁾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1992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 한정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감면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십 개 업종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음.
- 첫째, 현행 열거주의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의 산업과 직업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업종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확실하고, 새로운 업종의 등장 및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 변화의 속도가 뒤처지는 측면이 있으며, 매년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여부를 심사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비용과 입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종의 경우 기존 대상업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2016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대여업을 대상업종으로 새롭게 추가하였

9)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

고, 최근에도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심사되고 있음¹⁰⁾.

둘째, 수혜대상 업종 열거방식의 재검토 및 수혜대상 업종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수혜대상 열거 방식은 체계적이지 않아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에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본 조세특례 제도가 사실상 업종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최대한 광범위한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모든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992년 재무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 및 당시 회의록¹¹⁾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10) 녹색기술 관련 사업(서왕진의원안 2024. 9. 19. 발의),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정부안 2020. 8. 31. 제출), 자동차 운전학원의 버스, 건설 중장기 등 교육과정(김광림의원안 2018. 10. 24. 발의) 등

하고 있으나 최근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내지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세특례가 최초로 도입되었음.

이후 1994년 정보처리업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시작으로 2020년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까지 40여 개의 업종이 추가되어 광범위한 분야의 업종이 본 특례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조세지출을 유발하여 세입예산에 변동을 미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업 중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유사업종이지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매매·중개업과의 과세 형평성, 단순한 자산거래 서비스 제공 및 중개수수료 수취 기능만을 수행하여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

둘째, 적용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매년 약 2조원이 넘는 조세지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4년(2021년~2024년) 연속 조세지출 규모가 추정 가능한 조세특례 제도 중 감면규모 10위에 해당하

11) 제159회 국회 제8차 재무위원회(1992년 10월 30일)

는¹²⁾ 등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된 모든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¹³⁾.

셋째, 기획재정부는 본 제도가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이고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 중장기적으로 정책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감안할 때 업종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12)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3)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9.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업 및 대상 확대(이인선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동일업종기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 요건: <u>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u>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 ○ 감면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2026. 12. 31.까지 취업	□ 감면특례 적용 기업 확대(이인선의원안) 및 적용대상 확대(최은석의원안)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5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최은석의원안) ○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인선의원안) ○ 감면내용: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최은석의원안) - 공포 후 3개월(이인선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인선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09),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 2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업과 적용대상을 확대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인선의원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¹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최은석의원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대상 중 고령자 기준인 “60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¹⁵⁾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는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2011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신설 당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취

14) 현행 농업, 제조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1,205개 중 1,037개 업종에만 적용 중임.

1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율은 50%로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2015년 세법 개정으로 감면율을 70%로 다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간 150만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8년 세법 개정시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90%로 상향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감면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년까지로 연장하였음. 또한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대상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구분	2011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4년 개정
적용대상	청년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 절 근로자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취업 후 3년간 (청년은 5년간)				
감면율	100%	50%	70%		70%(청년 90%)		
감면 한도	-		150만원			200만원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1조 1,3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조 1,638억원, 2026년에는 1조 2,26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연도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전망)	2026 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6,059	7,792	8,397	9,667	9,609	11,384	11,638	12,26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먼저 이인선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상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직군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분야로 취업을 독려할 수 있으며,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 명으로, 여성 1,000만 5천명, 남성 621만 5천명이며, 재학, 수강 및 취업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9.1%인 것으로 확인됨¹⁶⁾.

16)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자료갱신일: 2025.9.10.), 통계청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24. 5.			2025. 8.			증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규 모	< 전 체 >	16,004	6,102	9,902	16,220	6,215	10,005	216	113	104
	- 육 아	686	15	670	684	14	671	-1	-2	1
	- 가 사	5,942	230	5,713	5,977	227	5,751	35	-3	38
	- 재학·수강등 ¹⁾	3,214	1,649	1,565	3,271	1,674	1,598	58	25	33
	- 연 로	2,453	1,463	990	2,480	1,471	1,009	27	8	19
	- 심신장애	460	293	166	472	302	170	12	9	3
	- 기 타 ²⁾	3,250	2,452	798	3,335	2,528	807	86	76	10
※ 취업준비 ³⁾		633	348	285	635	351	284	2	3	-2

주: 1.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2.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을 포함

3.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기타' 중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합계
자료: 통계청

이에 개정안과 같이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따르는 기대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높은 임금을 기대하여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단념한 자 또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동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내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총 23개의 사업군¹⁷⁾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에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업군의 상대적 소득수준 및 해당 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결정한 것임.¹⁸⁾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¹⁹⁾에 따르는 중소기업들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조세특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음. 동 조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총 업종별 매출액²⁰⁾ 또는 자산총액(5천억원) 요건만 충족하면

-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18)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등

1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이하 생략)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시행령 [별표 1],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매출액 400억원이하(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800억원(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조세지출을 확대할 경우 현행 제도상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산업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²¹⁾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상자들에게까지 소득세 감면 특례가 확대될 수 있음. 특히 회계·세무 등 고소득·전문직종, 유흥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종 등도 특례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²²⁾

□ 다음 최은석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은 적용대상인 고령자의 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함으로써, 기존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5세~60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취업대상자들의 소득세가 감면되어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령 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여 55세~59세 연령층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논의의

21)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채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집중하려는 당초 취지 등 감안시 회계·세무 등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 및 유흥주점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2) 특히, 현재 시행령을 통해 배제되고있는 금융 및 보험업, 통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고소득·전문직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상자들이 종사하는 직군일 수 있음.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자들이 동 제도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원 기업의 확대가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음.

흐름 및 현행 연령 기준 설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개정안의 방향이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정년 연장 등 최근 사회적 논의의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55세~59세 연령층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규모가 큰 편이므로, 해당 연령층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 규모에 대해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0세 이상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2024년)]

(단위: %, 만명)

연령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80.3	77.4	47.3
고용률	79.0	75.8	45.9
취업자	320	268	198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